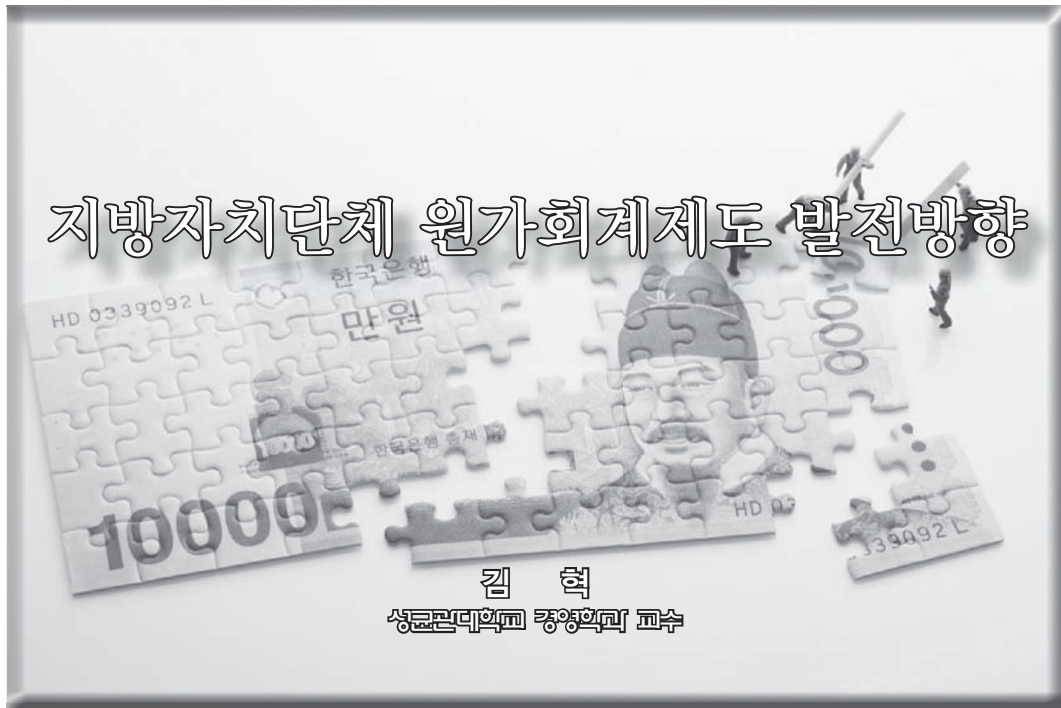




I. 서론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을 위하여 제공한 행정서비스의 원가정보는 특정사업이나 프로그램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수행되었는 지를 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정보다. 지방자치단체는 성과중심의 재정운영을 위해 복식부기 발생주의회계를 도입하고, 2008년에는 사업별 예산제도를 도입하였다. 발생주의회계와 사업별 예산제도는 기존의 현금주의·예산회계에 비해서 업무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만 사업을 위해 소비한 구체적인 원가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면에서 부족한 점이 있었다.

정책사업이나 각 세부프로그램에 대한 원가정보는 사업관리 부서가 사업관리와 사업의 진척도와 함께 원가를 파악함으로써 사업수행상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고 상황변화에 따른 시행착오를 방지하여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게 한다. 특히 재정투융자사업, 행사성사업 등의 계획과 실제 투입된 원가를

비교하여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원가정보 중 통제경비인 관리운영비를 별도로 파악함으로써 방만하게 집행될 수 있는 복리후생비나 청사운영비와 같은 관리운영비를 통제하고 외부감시를 할 수 있다. 더불어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해당 사업에 배부함으로써 자산이 무상재(free goods)라는 인식을 없애고 자산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별 원가정보를 위한 제도와 원가기준수립을 위해 2010년에 한국정부회계학회에 용역을 의뢰하였다. 한국정부회계학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원가정보를 산출하기 위한 쟁점사항의 논의와 함께 원가계산준칙(안)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 원가정보의 산출 및 활용방안」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2010년 12월에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준칙을 제정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을 2011년 5월에 개정하여 원가회계 시행에 따른 재정운영보고서의 양식 변경 등 회계기준의 내용을 보완하였다.

이 글은 원가회계의 시행을 위해 개정된 회계기준과 원가계산준칙의 내용을 살펴본 후 2012년부터 시행될 원가회계제도의 구체적인 시행 방향 등을 알아보고자 한다.

II. 사업별 원가회계의 주요 내용

1. 사업별 원가계산을 위한 재정운영보고서의 구조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별 원가정보는 재정운영보고서에 표시된다. 기존의 재정운영보고서는 사업 총원가만을 표시 하였는데 개정된 지방회계기준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한 사업의 총원가에서 그 사업으로 인한 수익을 차감한 순원가(net cost)를 표시 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사업수행을 지원하는 인건비와 경비항목인 관리운영비를 별도 표시하여 관리운영비를 통제할 수 있는 구조를 제시하고 있다.

〈그림1〉은 재정운영보고서의 구조를 제시한다.

〈그림 1〉 재정운영보고서의 구조

과 목	설 명
I. 사업순원가 사업총원가 -사업수익	· 사업총원가: 각 사업을 위한 총원가임 · 사업수익: 각 사업으로 인한 수익
II. 관리운영비	·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운영비
III. 비배분비용 (사업외 비용)	· 자산처분손실과 같이 사업과 관련없는 비용
IV. 비배분수익 (사업외 수익)	· 자산처분이익과 같이 사업과 관련없는 수익
V. 재정운영순원가	· 사업순원가에 관리운영비와 비배분 비용을 가산하고 비배분 수익을 차감함 금액
VI. 일반수익	· 지방세수익이나 교부수익 등
VII. 재정운영결과	· 재정운영순원가에서 일반수익을 차감한 금액

2. 원가대상으로서의 사업수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별 예산은 행정서비스 기능을 13개 분야로 나눈 다음 세부활동인 51개 부문으로 나눈다. 이후 각 소관부서별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으로 세분화한다. 〈그림2〉는 서울 강북구 교육정책과의 사업별 예산체계를 보여준다.

〈그림 2〉 서울 강북구 교육정책과 사업별 예산체계 예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교육1등구 육성	교육문화환경 내실화	교육환경개선 지원
		어린이 꿈나루 큰 잔치
	교육환경개선 지원	문화예술 및 학습교육지원
		초등학교주변 CCTV설치
		학교내 복합화시설 건립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재무활동	보전지출	보조금 반환금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인력운영비	인력운영비

이처럼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으로 사업의 계층이 있는데 이 중 원가보고서를 어느 사업계층으로 공시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 상위 사업단위인 정책사업의 원가를 계산하면 매우 단순하고 계산의 부담이 가볍다. 그러나 하위의 단위사업이나 세부사업에 대한 원가정보를 알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세부사업단위에 대한 원가계산은 구체적인 사업별로 원가정보를 제공하는 면에서 바람직하지만 보고양식이 복잡하고 정보가 너무 많이 공개되어 이용자가 활용하기에 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원가계산준칙은 2원적인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먼저 원가계산은 세부사업단위까지 시행하지만 외부에 공개하는 원가보고서는 정책사업단위까지만 보고하기로 하였다. 세부사업단위의 원가는 내부관리 목적으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특별회계의 경우 정책사업이 하나인 경우가 많으므로 외부용 원가보고서를 단위사업수준에서 작성하도록 하였다.

또한, 특정 세부사업이 여러 종류의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면 더 세분화된 재화나 용역을 원가대상으로 하여 원가계산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예산편성기준에 따른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은 원가대상으로 설정하지 못한다. 원가계산준칙 제 7조는 원가대상 설정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7조(원가대상의 설정) ① 원가대상은 의사결정이나 관리통제가 필요하여 원가를 개별적으로 측정할 필요가 있는 단위로 설정하여야 한다.

② 예산편성기준에 따른 세부사업이 여러 종류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다면 각 재화 또는 용역을

원가대상으로 설정할 수 있다.

③ 예산편성기준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은 원가대상으로 설정할 수 없다.

3. 사업직접원가

사업직접원가는 특정사업 추진을 위하여 직접 사용한 원가를 말한다. 사업직접원가는 원가대상인 특정사업에 직접 부과한다.

사업직접원가로는 특정사업 수행을 위한 인건비와 지급수수료, 유류비, 수선유지비 등의 운영비 및 이전비용이 포함된다. 또한, 특정사업을 위한 재화와 용역제공원가, 외주가공비 및 특정사업 수행에 사용된 장비의 감가상각비가 포함된다.

사업직접원가 중 현금으로 지출된 원가는 사업별 예산회계자료에 의해 쉽게 집계할 수 있다. 그러나 비현금원가인 감가상각비 중 사업직접원가를 분리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다.

최근에 구입한 유형자산은 사업별로 구분관리하므로 유형자산의 구분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사업별로 구분 집계할 수 있다. 그러나 과거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유형자산은 사업별 구분이 없기 때문에 해당자산의 성격을 살펴 직관적으로 분류하는 수 밖에 없어 정확성의 문제가 있다.

또한 해당자산의 감가상각비 건수가 많기 때문에 이를 사업별로 구분하는 일은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다. 이 문제는 중요성의 원칙에 따라 상대적으로 금액이 큰 감가상각비만 사업별로 구분하는 방식으로 해결 할 수 있다.

〈표1〉에서 보듯이 충주시 감가상각비 자료를 보면 충주시 전체 자산개수 26,397개 중 1백만원이상의 자산개수는 6%인 1,584개에 불과하지만 감가상각비 금액은 전체 감가상각비의 91.7%에 달하여 1백만원이상의 감가상각비만 사업코드를 부여하여 직접원가에 포함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식이라고 본다.

〈표 1〉 충주시 감가상각자료

부 서	개 수	감가상각비	자산개수 비중			감가상각비 비중		
			≥1백	≥5십	≥1십	≥1백	≥5십	≥1십
경제건설국 건축디자인과	197	494,685,088	6,6%	8,1%	27,4%	97,0%	97,4%	99,3%
경제건설국 경제과	210	1,480,647,933	12,9%	15,7%	25,2%	99,1%	99,4%	99,8%
경제건설국 교통과	419	806,441,425	6,7%	10,0%	25,5%	95,5%	96,6%	98,7%
경제건설국 도로과	431	282,902,696	8,4%	10,0%	37,6%	87,4%	89,2%	98,3%
경제건설국 지역개발과	101	270,417,509	5,9%	5,9%	42,6%	96,4%	96,4%	99,4%
공공시설관리소	624	274,938,667	1,4%	3,2%	14,3%	86,8%	89,6%	94,6%
기획행정국 자치정보과	3,829	1,554,926,882	2,1%	2,9%	8,3%	89,1%	90,4%	93,6%
기획행정국 총무과	1,229	850,252,666	2,0%	2,7%	8,8%	94,7%	95,4%	97,2%
기획행정국 회계과	781	789,031,533	7,7%	9,2%	17,8%	95,1%	96,3%	98,5%
농업기술센터	570	273,694,775	10,5%	13,9%	34,7%	79,7%	85,1%	94,8%
농업정책국 농정과	145	504,362,428	13,1%	15,9%	30,3%	98,0%	98,4%	99,5%
농업정책국 산림녹지과	1,168	1,546,256,497	10,6%	13,9%	37,1%	92,4%	94,0%	98,0%
문화복지국 관광과	619	1,169,010,154	9,4%	12,6%	35,7%	95,0%	96,2%	99,0%
문화복지국 문화체육과	1,009	724,095,761	7,7%	12,5%	34,9%	85,4%	90,2%	97,1%
문화복지국 사회복지과	967	345,198,684	1,9%	2,6%	13,0%	86,4%	87,7%	94,3%
문화복지국 환경과	390	1,086,978,648	16,4%	18,7%	39,0%	97,1%	97,8%	99,4%
보건소 건강증진과	752	3,771,106,082	2,3%	3,6%	24,5%	98,3%	98,5%	99,5%
수자원본부	36	714,372,225	72,2%	94,4%	100,0%	99,1%	100,0%	100,0%
임정면	194	308,156,216	40,2%	51,5%	74,2%	89,8%	95,0%	99,4%
장묘시설관리소	347	393,776,669	3,5%	6,3%	25,9%	92,3%	93,9%	97,3%
체육시설관리소	369	1,667,668,464	5,4%	10,3%	24,4%	97,7%	98,5%	99,3%
충주시립도서관	1700	587,008,437	4,1%	6,1%	17,2%	80,6%	85,4%	92,6%
지자체 전체	26,397	23,708,417,864	6,0%	8,6%	22,9%	91,7%	93,8%	97,6%

원가계산준칙 제 9조는 직접원가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9조(직접원가) ① 직접원가는 원가대상이 되는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직접 사용한 원가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포함한다.

1. 직접 제품생산이나 서비스 제공 업무를 처리하는 인력의 인건비
2. 사업 추진에 직접 사용한 운영비 및 이전비용
3. 사업 추진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감가상각비(무형자산상각비를 포함한다)

② 직접원가는 원가대상에 직접 부과한다.

4. 사업간접원가

(1) 사업간접원가의 범위와 배부기준

사업간접원가는 사업의 수행을 위해 소요되었으나 여러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특정사업에 직접 부과하는 것이 불가능한 인건비, 지급임차료, 수선유지비 등의 원가를 말한다. 사업간접원가는 동일 부서에서 공통으로 발생한 간접원가와 다른 부서에서 발생한 간접원가로 구분할 수 있다.

사업간접원가는 원가집계대상과의 인과관계를 고려한 합리적 배부기준에 따라 각 사업에 배부한다. 원가계산준칙 제10조와 제11조는 간접원가와 간접원가 배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0조(간접원가) ① 간접원가는 여러 사업의 추진에 사용되어 원가대상에 직접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원가를 말한다.

② 간접원가는 적용가능성, 원가대상과의 인과관계 등을 고려한 합리적 배부기준에 따라 배분한다.

③ 간접원가에 포함되지만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운영비에 포함되는 것은 원가대상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다만 관리목적으로는 배분할 수 있다.

제11조(간접원가의 배부기준) 제10조 제2항에 따른 간접원가의 배부기준은 다음 각 호의 항목 중 하나를 적용한다.

1. 인원수 또는 인건비
2. 원가대상의 직접원가
3. 사용면적 또는 자산금액
4. 업무량 또는 근무시간
5. 기타 합리적인 방법

(2) 관리운영비

관리운영비는 기업회계의 일반관리비 및 판매비와 같이 조직의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

한 인건비와 기본경비, 물건비 등 운영경비를 말한다. 예산회계에서는 행정운영경비라 하며 기관의 기본 기능수행 및 특정사업의 행정운영을 위한 경비이다.

관리운영비는 넓은 의미에서 사업을 지원하는데 소요된 원가이므로 사업별로 배분하여 해당 사업의 총원가를 파악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관리운영비는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에 소요된 원가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운영을 위한 비용이므로 경제성의 원칙에 의해 절약과 통제를 필요하는 성격이 있다. 이에 따라 관리운영비는 사업원가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로 관리운영비로 처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서비스요금 산정이나 특정 업무의 외주방식검토 등 세부사업이나 활동에 대한 원가정보가 필요한 경우 관리운영비를 당해 사업이나 활동에 배부한 총원가를 내부 의사결정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원가계산준칙 제17조와 제18조는 관리운영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7조(관리운영비) ① 관리운영비는 조직의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건비, 기본 경비 등 운영경비를 말한다.

② 일반행정 기능에서 사업 등의 예산에 편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조직의 일반관리 업무에 관련된 인건비와 운영경비로서 시민 등이 직접 편익을 보는 경비가 아닌 경우에는 관리운영비로 처리한다.

③ 서비스 요금책정의 기초자료 작성, 관리방법의 개선, 특정 업무의 외주방식 검토, 타 자치단체와 비교 등을 위한 관리회계에서는 관리운영비도 간접비로서 배부하여 의사결정 자료에 사용할 수 있다.

제18조(관리운영비의 항목 구분) 관리운영비는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1. 인건비: 급여, 복리후생비 등
2. 운영비: 소모품비, 도서구입및인쇄비, 홍보및광고비, 지급수수료, 제세공과금, 임차료, 연료비, 수선유지비, 출장비, 업무추진비, 감가상각비 등

(3) 사업외 비용(비배분 비용)

사업외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출한 비용이지만 정책사업 등 특정 사업이나 활동이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사업에 배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원가를 말한다. 사업외 비용을 지방회계기준에서 비배분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업외 비용은 이자비용, 자산감액손실, 자산처분손실, 평가손실, 대손상각비, 기타 사업외 비용이 포함되며 사업에 배부하지 않는다. 원가계산준칙 제19조는 사업외 비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19조(사업외비용) 사업외비용은 사업 등과 관련이 없거나 임시 우발적으로 발생되어 사업 등에 배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비용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항목이 포함될 수 있다.

1. 이자비용
2. 자산감액손실
3. 자산처분손실
4. 대손상각비
5. 기타 사업외비용

5. 사업순원가

(1) 사업순원가 계산

사업순원가는 특정사업을 위해 소요된 사업총원가(사업직접원가와 사업간접원가 합계)에서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사업수익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박람회나 축제와 같은 행사성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의 전체경비와 함께 행사로 인한 수익의 내용을 제공하는 것이 사업의 편익판단 및 회계 책임성 평가에 도움을 준다. 행정형 회계의 사업순원가는 해당사업에 소요된 순자원소모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사업형회계의 경우 제공한 서비스의 원가회수 정도를 알려주는 의미가 있다.

원가계산준칙 제12조는 사업순원가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2조(사업순원가) ① 사업순원가는 원가대상의 사업총원가에서 그 원가대상의 사업수익을 빼서 계산한다.

② 행정형 회계실체의 사업순원가는 사업의 추진에 투입한 실 자원소모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형 회계실체의 사업순원가는 서비스의 제공을 서비스의 원가회수 정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2) 사업수익

사업수익은 특정사업의 운영에 따른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발생한 수익을 말한다. 사업수익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한 서비스 요금수익과 국가등으로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보조금으로 구분한다.

서비스요금수익은 재화나 서비스의 판매수익과 같이 서비스 수혜자로부터 그 대가로 받는 수익을 말한다.

이 범위에 속하는 수익들은 물의 사용, 쓰레기 청소와 같은 특정서비스의 대가나 주류 판매업 허가, 건축허가와 같은 특별한 면허료와 수수료나 기타 서비스 수혜자에게 부과하는 금액이 포함된다.

또한 자치단체간 교환거래, 예를 들면 타 지역 주민을 위하여 쓰레기 소각장을 같이 이용하는 경우 그 소각장 운영경비를 다른 자치단체에 부담시키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행정형 회계에서도 행사성 사업의 관람시설 입장료, 관유물대여료 등과 각종 행정관련 면허료·수수료, 실습수입, 시설사용료, 수입대체 경비 수입 등과 자체조달 수익 중 정상세의 수익에 해당하는 재산임대 수익, 사용료, 수수료 등의 수익도 이에 해당된다.

수입대체경비 수익은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제공받는 자로부터

그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와 같이 수입 범위 안에서 관련경비 총액을 지출할 수 있는 경우와 경비의 성질상 특정지출이 직접수입을 수반하는 경우 당해 수입의 한도 내에서 당해 경비를 직접 지출할 수 있도록 인정한 제도다.

서비스 요금수익은 원칙적으로 교환거래 수익에 해당하므로, 주차위반을 한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와 범칙금 등은 비록 경상세외수익에 포함되고 교통시설 관리사업의 재원에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는 납부자의 비자발적인 의사로 납부한 것으로 교환거래가 아니므로 사업 관련수익으로 처리하여서는 안된다.

또한, 징수교부금 수익은 비교환거래 수익인 지방세 등을 징수하고 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금액을 지원 받는 것으로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수익이라 볼 수 없다.

여권발급 등 신청인으로부터 여권발급에 따른 경비로서 특정 서비스 요금으로 받았으나 그 수입 성질이 지방세 수입증지와 같이 여러 민원업무에 관련되고 활동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 관련수익이 아니라 일반수익으로 처리한다.

수익이 실제 서비스 원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명목상의 징수(예, 서비스 요금으로 100원 징수)이거나 금액이 소액으로 사업관리에 영향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사업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다.

보조금 등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특정 사업 등과 관련하여 이전받은 보조금 및 특정 사업으로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 등 민간으로부터의 이전수익을 말한다. 특정 사업의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운영보조 목적의 보조금 등(이하 운영보조금)은 사업수익으로 본다. 다만, 특정 사업에 사용될 자산의 취득을 지원하기 위한 자본보조 목적의 보조금 등(이하 자본보조금)은 사업수익에서 제외하고 순자산증가로 처리한다.

특정 사업에 관련되지 않거나, 여러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보조금 등은 사업수익에서 제외한다. 다만, 특정 사업과 관련된 보조금 등에 운영보조금 및 자본보조금이 같이 포함된 것이 명백하다면 그 운영보조금은 사업수익으로 본다.

특정 사업과 관련된 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발생한 운용수익(기금의 예금이자 등)은 사업수익에서 제외한다. 기부금은 통상 기금으로 적립되어 운용되며 수익 중 매년 수취하는 기부금은 사업수익이나, 기부금의 적립액의 운용에 따른 이자수익 등은 일반수익으로 분류한다.

원가계산준칙 제13조에서 제15조는 사업수익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3조(사업수익) ① 사업수익은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직접 발생한 수익과 국가 등으로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수익 등을 말한다.

② 사업수익은 서비스 요금 수익과 보조금 등으로 구분된다.

제14조 (서비스 요금수익) ① 서비스 요금수익은 재화·서비스의 판매수익 등과 같이 서비스의 수혜자로부터 그 대가로 받는 수익을 말하며, 다음 각호의 항목을 포함한다.

1. 사용료수익, 수수료수익, 사업장생산수익, 의료사업수익 등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로 받는 수익

2. 수입대체경비 수익

3. 기타 서비스요금수익

② 과태료·과징금 등의 제재금 수익, 변상금, 위약금 등과 같이 서비스 제공의 대가가 아닌 비교환수익은 사업수익에서 제외한다.

③ 서비스요금 수익이지만 원가대상별로 식별하기 곤란하고 금액의 크기가 중요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5조 (보조금 등) ① 보조금 등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특정 사업 등과 관련하여 이전받은 보조금 및 특정 사업으로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 등 민간으로부터의 이전수익을 말한다.

② 특정 사업의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운영보조 목적의 보조금 등(이하 “운영보조금”이라 한다)은 사업수익으로 본다. 다만, 특정 사업에 사용될 자산의 취득을 지원하기 위한 자본보조 목적의 보조금 등(이하 “자본보조금”이라 한다)은 사업수익에서 제외하고 순자산 증가항목으로 처리한다.

③ 특정 사업과 관련된 보조금 등에 운영보조금 및 자본보조금이 같이 포함된 것이 명백하다면 그 운영보조금은 사업수익으로 본다.

6. 사업외 수익(비배분 수익)과 일반수익

사업외수익은 특정사업과 관련이 없거나 사업수익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수익을 말하며, 일반수익은 사업수익이나 사업외수익에 속하지 않는 수익을 말한다. 사업외수익과 일반수익은 사업순원가계산에서 제외되며 별도로 표시한다.

사업외수익은 경상세외수익 및 임시세외수익 중 일부 항목이 해당된다. 그 예는 이자수익, 평가이익, 감액손실환입, 가산처분이익 등이 포함된다. 지방회계기준은 사업외수익을 비배분수익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반수익은 사업수익에서 설명한 보조금이나 특정사업과 관련된 기부금을 제외한 모든 비교환거래에 관련된 수익을 말한다.

일반수익은 지방세 및 양여금, 교부금, 특정사업과 연관하지 않고 2 개 이상 사업과 관련된 보조금(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제외), 타 회계 전입금, 기금 출연금, 과징금, 부담금 중 손상자 부담금이나 원인자 부담금, 변상금 및 위약금, 가산금, 기타 경상이전수입은 물론이고 특정프로그램과 관련 없이 받아들이는 기부금도 이에 해당된다.

세금이나 과징금, 부담금의 경우 특정용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일반수익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와 같이 주차장 특별회계나 주차장 사업을 위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도 사업수익으로 분류하지 말고 일반수익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원가계산준칙 제20조와 제22조는 사업외수익과 일반수익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20조(사업외수익) 사업외수익은 교환거래로 발생한 수익이지만 사업 등과 관련이 없거나 사업수익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수익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항목이 포함될 수 있다.

1. 이자수익
2. 감액손실환입
3. 자산처분이익
4. 대손충당금환입
5. 기타 사업외수익

제22조(일반수익) ① 일반수익은 사업수익이나 사업외 수익에 속하지 아니하는 비교환 거래 수익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포함한다.

1. 지방세수익
2. 과태료수익
3. 과징금및이행강제금수익
4. 변상금및위약금수익
5. 일반 부담금수익
6. 지방교부세수익
7. 재정보전금수익
8. 조정교부금수익
9. 기타 일반수익

② 목적세나 과징금, 부담금의 경우 특정 회계실체, 용도나 사업 등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일반수익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III. 원가정보산출을 위한 제도 발전 방향

1. 사업예산 편성의 개선

사업원가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사업별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어야 한다. 현행 사업별 예산 중 고쳐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부사업은 각 과에서 정책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해 산출별로 설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세부사업을 비목의 내용을 표시하거나 불분명하게 표시하여 세부사업원가 집계에 어려움이 있다.

둘째, 시책업무추진비는 정상적인 업무추진 이외에 사업활동의 추진과정에서 필요하다는 사유로 각 담당부서의 사업비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다. 현업부서 종사원이 집행하는 업무추진비만 사업비로 계상하고 본청의 각과 소속 간부나 일반관리직이 집행하는 모든 업무추진비는 행정운영경비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행정운영경비 중 인건비는 본부 관리직의 인건비를 계상하고 현업 종사직원의 인건비는 사업비로 구분해서 예산편성을 하여야 하지만, 이를 구분하지 않고 행정운영경비를 편성하는 수가 많다.

2. 재정운영보고서의 개정

원가회계를 시행하게 되면 재정운영보고서를 세부사업별 원가정보와 연계할 수 있도록 구조를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업순원가는 사업총원가에서 사업수익을 차감해서 표시하도록 하며, 관리운영비, 사업외비용, 사업외수익, 일반수익 등을 별도 표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방회계기준은 <그림3>과 같이 재정운영보고서를 개정하였다.

〈그림 3〉 재저운영보고서

【 별지 제2-1호서식 】

재정운영보고서(기능별)

당해연도 20××년×월×일부터 20××년×월×일까지
직전연도 20××년×월×일부터 20××년×월×일까지

지방자치단체명

(단위 : 원)

과 목	당해연도(20××년)			직전연도(20××년)		
	총원가	사업수익	순원가	총원가	사업수익	순원가
I. 사업 순원가	XXX	(XXX)	XXX	XXX	(XXX)	XXX
일반공공 행정	XXX	(XXX)	XXX	XXX	(XXX)	XXX
공공질서 및 안전	XXX	(XXX)	XXX	XXX	(XXX)	XXX
—	XXX	(XXX)	XXX	XXX	(XXX)	XXX
II. 관리운영비			XXX			XXX
1. 인건비			XXX			XXX
급여			XXX			XXX
—			XXX			XXX
2. 경비			XXX			XXX
도서구입 및 인쇄비			XXX			XXX
—			XXX			XXX
III. 비배분 비용			XXX			XXX
자산처분손실			XXX			XXX
기타비용			XXX			XXX
IV. 비배분 수익			XXX			XXX
자산더분이익			XXX			XXX
기타이익			XXX			XXX
V. 재정운영순원가			XXX			XXX
VI. 일반수익			XXX			XXX
1. 자체조달수익			XXX			XXX
지방세수익			XXX			XXX
경상세외수익			XXX			XXX
임시세외수익			XXX			XXX
2. 정부간 이전수익			XXX			XXX
지방교부세 수익			XXX			XXX
보조금 수익			XXX			XXX
3. 기타 수익			XXX			XXX
전입금 수익			XXX			XXX
기타 재원조달			XXX			XXX
VII. 재정운영결과 (V-VI)			XXX			XXX

3. 개별 재무제표 작성 및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의 지방회계기준 적용

현행의 재무제표는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금을 유형별로 작성한 후 유형별 재무제표를 통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다. 사업관리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개별 재무제표에서 알 수 있는데 개별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기 때문에 향후 개별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또한, 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 지방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원가회계를 시행하게 되면 직영공기업도 관리운영비의 구분, 사업수익과 일반수익의 구분 등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규정하는 손익계산서보다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앞으로는 공기업특별회계도 지방회계기준을 적용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이 문제는 「지방공기업법」을 개정하여야 하므로 법이 개정된 후 시행하도록 한다.

4. 원가시스템의 구축과 원가정보관리

지방자치단체에 유용한 재무회계를 위해서는 핵심 원가 정보가 일회성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수집·보고되어 적시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원가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원가정보 이용자의 요구사항 분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보고시스템에 반영해야 한다. 최소한 다음 두 가지 핵심적 인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 지자체보고시스템의 핵심은 원가정보 제공임.
- 사업관리자를 비롯한 정보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원가정보는 조직유형, 사업 및 활동 그리고 기능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는 것임.

이용자 요구사항 분석은 원가시스템 설계의 근간을 이룬다. 이용자 그룹을 식별하고 이들의 우선순위를 파악하는 것이 선결과제이다. 참고로 개별 이용자 그룹의 구체적 요구사항을 확인함에는 다음을 고려해야 한다.

- 원가정보이용자
- 구체적 원가자료의 필요성
- 원가정보의 분석 및 활용 방식
- 원가자료의 적시성과 빈도

원가정보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사업관리에도 활용하지만, 금년 발생원가는 다음해 운영계획 및 예산편성의 기초정보가 되며 장기 계획수립에도 중요한 기초정보자료가 된다.

또한, 원가정보는 특정 사업의 연도간 비교 등 의사결정이나 지표개발 및 통계목적 사용 등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유지 보관하여야 한다.

예산회계 정보와 함께 사업별 원가정보는 사업관리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나 회계정보 중에는 보안유지나 불필요한 접근으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접근 및 이용체제를 설정하여 운영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사업관리자가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각종 사업(가령, 단위사업)별 원가정보에 기초하여 의사결정을 내리고 원가정보가 사업 및 부서 운영의 경제성 및 효율성 개선에 유용하기 위해서는(가령, 사업별 중간모니터링 목적의 계획 대비 실적 비교) 반드시 일반재무보고서에 기록된 원가와 사업 관리자들에게 보고된 원가 사이에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원가와 관련된 용어의 표준화는 물론 해당 원가 정보 산출을 위한 집계 등 원가정보 관리에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5. 원가회계제도의 시범운영 및 시스템 보완

개정된 재정원가보고서와 원가회계제도는 2012년부터 실시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2010 회계연도 결산분에 대해서 2011년 중 시범실시를 하여 시스템이나 회계과목 등 시행상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행정안전부는 2011년 7월 중 10개 내외의 자치단체를 선정하여 2010 회계연도의 원가회계를 시범

실시하기 위해 추진 중에 있다. 또한 2011 회계연도에 대해서는 2012년 7월에 전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할 계획이다.

시범운영 결과에 따라 e호조시스템 및 제도 보완을 한 후 2012 회계연도에 대해 2013년의 결산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는 추진계획이다.

2011년도와 2012년도의 시범운영은 수익·비용구조의 재정운영보고서를 사업별 순원가 산출 방식의 재정운영보고서로 전환하는 것을 기본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이 같은 행정안전부의 시범운영 및 전산시스템 보완을 통해서 원가회계제도가 원만하게 정착되리라고 믿는다.